영등포구의회 제16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2. 5. 7

行政委員會 專門委員 李憲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113호로 2012년 4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3의 신설에 따라 구청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여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정의 : 비용추계서, 세출, 세입 등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한 용어 규정(안 제2조제4호~제2조제6호)
- 나. 비용추계서 작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2조)
 -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정함

- 작성 대상 :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의안
- 제외 대상 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-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예산을 수반시 비용추계서 작성 다.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및 서식을 정함(안 제13조)
 -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,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, 재원 조달방안, 작성자 등이 포함(별지 제2호)
- 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, 필요시 단축·연장가능 라.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규정(안 제14조)
 - 추계서의 제출시기는 구의회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첨부
-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시 미첨부 사유서 제출(별지 제3호) 마.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맞게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3

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개정('11.10.15 시행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O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 소액을 추계한 자료를 비용추계서로 정의하고 세출과 세입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
- 안 제12조에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의안으로 하고, 제외 대상에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민청구조례 안이 그 시행에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에서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함.

▶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 의안 비교 ◀

정 부	서 울 시	타시도
•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	•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	• 연평균 일반예산
시적 경비로서 30억원 미만	한시적 경비로서 총 10	<u>1억원 미만, 한시</u>
인 경우	억원 미만인 경우	적 경비 3억원 미
• 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		<u>만</u>
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		
<u></u>	•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	●의안의 내용이 선
•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	권고적으로 규정되는	언적 ·권고적으로
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소	등 기술적으로 추계가	규정되는 등 기술
요추계의 내용을 첨부하기 곤	어려운 경우	적으로 추계가 어
란한 경우		려운 경우

- 안 제13조에 비용추계서 작성방법과 서식을 정하고 비용 추계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비용발생 내역, 비용 추계의 기준 및 결과,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도록 하였고, 비용추계의 기간을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필요시 단축·연장이 가능하며,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용하도록 함.

- 안 제14조에 비용추계서 제출시기를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되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첨부하도록 하고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.
- 그 밖에 법제처의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맞게 조문을 일괄 정비함.
-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3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안 제출 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안 발의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의안심사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무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66조의3(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)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 국가재정법

제87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) 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·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-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

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 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.

3 국가재정법 시행령

제40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) ① 법 제87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
- 2. 재정소요추계의 내역
- 가. 재정부담 수반의 요인
- 나. 추계의 전제
- 다. 추계의 결과
- 라. 추계의 상세내역
- 3. 작성자
- ②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 으로 한다.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, 조세수입, 세외수입, 국채발행, 차입, 일반회계·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 기관에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

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. 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
- 2.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
- 3. 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⑥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